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-92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 : 장정희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5조의 제목 “**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**”을 “**운영 지원**”으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안 제15조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”을 “운영 지원”으로 하고, 제5조를
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
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15조를 삭제한다.

